

# --- 목 차 ---

의 번 안 호	건  명	페이지
2019-12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
2019-123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5
2019-124	거창스포츠파크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25
2019-125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29
2019-126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7
2019-127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식자재 조달대행(부분위탁)연장동의안	47
2019-128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51
2019-129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57
2019-130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63
2019-131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71
2019-132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77
2019-133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79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9~122
----------	----------

제출일자 : 2019. 11.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1. 요구이유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계획 따라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공공성을 갖추고 지역사회 노인복지 네트워크의 중심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대상사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나. 사업 주요내용

- 노인맞춤 돌봄 대상자 조사
- 대상자별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 서비스 제공인력(서비스관리자, 생활관리사) 채용·관리·운영
- 서비스 제공
  - 직접 서비스 :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 연계 서비스 : 민간후원자원 지원

다. 위탁기간 : 2020. 1. 1. ~ 2020. 12. 31.(1년)

라. 수탁자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내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마. 위탁기관 : 3개 기관

구 분	해 당 권 역	수행기관
1권역	거창읍(대평리, 김천리, 송정리, 장팔리, 정장리) 남상면, 남하면, 신월면	1개소
2권역	거창읍(대동리, 서변리, 동변리, 학리, 양평리) 주상면, 가조면, 가북면, 웅양면	1개소
3권역	거창읍(상림리, 중앙리, 가지리) 마리면, 위천면, 북상면, 고제면	1개소

바.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보건복지부 심사표에 의거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

### 3.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필요성

-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수탁 기관으로 선정함으로써 보건복지부 사업계획에 따라 2020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안정적·성공적인 정착을 꾀하기 위함

#### 나.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사무의 위임 등)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지침(2019. 9. 9.)

#### 다. 추진현황

- 2019. 10. 1.(화) : 민간위탁관련 주례회의 보고
- 2019. 10. 4.(금) : 수행기관 모집 공고
- ※ 공고기간 : 2019. 10. 4. ~ 10. 18.

#### 라. 향후계획

- 2019. 10월 말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
- 2019. 11월 초 : 수행기관 계약 체결

#### 마.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 반영(가내시) : 2,414,280천원(국비 70%, 도비 9%, 군비 21%)

#### 바. 위탁운영 계획, 공고문 : 따로 붙임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시행 계획

❖ 현 노인돌봄서비스의 한계점 도출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업 확정에 따라 2020년부터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운영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시행 계획입니다.

## I 추진배경

- 현 노인돌봄사업은 개별 사업 추진으로 중복과 누락 등 사업수행의 비효율성과 서비스대상의 돌봄욕구 충족의 어려움 등 문제점 발생
- 6개 사업 통합으로 욕구중심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질 향상
  - ※ 6개 사업 :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지역사회 자원연계,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초기독거노인 자립지원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지침

## II 기본방향



### III 사업개요

- 사업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기간 : 2020년 ~ (연중)
- 대상 : 65세 이상 국민기초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사업내용
  - 직접서비스
    - 안전지원 : 안전·안부확인, 말벗 등
    - 생활교육 : 건강운동, 영양섭취, 인지저하예방 등
    - 일상생활지원 : 병원·외출동행, 장보기, 가사·신체 수발 등
    - 사회참여 : 친구만들기, 자조모임 등
  - 연계서비스 : 민간후원자원 연계

### IV 추진내용

- 권역설정(안) : 3개 권역(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 2~3개 권역)

구분	지역(안)
1권역	남상, 남하, 신원, 거창읍(대평리, 김천리, 송정리, 장팔리, 정장리)
2권역	주상, 가조, 가북, 웅양, 거창읍(대동리, 서변리, 동변리, 학리, 양평리)
3권역	마리, 위천, 북상, 고제, 거창읍(상림리, 중앙리, 가지리)

- 서비스 제공 흐름도



- 서비스대상자 발굴, 선정, 조사 등 세부 처리 : 사업안내지침에 따라 추진

## V 수행기관 위탁계획

### ■ 수행기관 자격

-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 사회서비스원(방문요양 제공 시에도 가능)
- 지자체 직영 시설

### ■ 시설기준

확보필요 공간	기 준	규 모(안)
사무공간	전용공간	기관의 사정과 원활한 사업수행 고려하여 판단
상담공간	전용공간	
프로그램실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활용계획 마련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한 공간

### ■ 위탁세부계획

- 위탁방법 : 공모 원칙(권역별 공모) - 3개소
- 위탁공고 : 2019. 10. 4.(금)
- 위탁업무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 업무
- 제출서류 : 수행기관신청서, 법인일반현황, 사업계획서, 법인설립 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시설 한)
- 위탁기간 : 1년(평가를 통해 재위탁 가능)
-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준용
- 심 사 : 보건복지부에서 교부한 심사표에 따라 심사
  - 심사내용 : 시설기준, 수행경험,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 종합적으로 심사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대면심사

## VI 추진현황

- 2019. 10. 1. : 민간위탁관련 주례회의 보고
- 2019. 10. 4. : 수행기관 모집 공고 /※ 공고기간 : 2019. 10. 4. ~ 10. 18.

## VII 향후계획

- 2019. 10월
  - 수행기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위탁기관 선정 및 위탁계약
  - 기존 및 신규 수행기관에 현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이관계획 등 안내
  - 수행기관 선정결과 보고 : 경상남도
  - 현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에 사업 개편사항 등 안내
- 2019. 11월
  - 민간위탁 의회 승인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채용 : 보건복지부에서 지침 시달 예정
  - 수행인력 서비스 사업지침 교육
  - 기존대상자에게 사업 개편사항 안내
- 2019. 12월
  - 시스템상 대상자 이관 조치
  - 사업지침 설명회

## VIII 기대효과

- 서비스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맞춤 제공
- 하나의 수행기관에서 통합적·체계적 서비스 제공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안내 및 수행기관 선정관련 지침 교부

1. 관 련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4257(2019.9.6.)호
2.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존 국고보조 노인돌봄사업을 통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오니 전 시·군에서는 추진 계획(붙임 1)에 따라 '20년 1월부터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경남>기존 노인돌봄사업 : ①노인돌봄기본서비스, ②노인돌봄종합서비스, ③단기가사서비스, ④재가장기요양기관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 ⑤특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청구망동기 사업)
3. 아울러, 관내 기존 노인돌봄사업 수행기관에 사업 개편사항 등에 대해 안내하여 주시고 '20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되어도 기존 노인돌봄사업 대상자에게 서비스가 **중단 없이 지속 제공** 될 예정이므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수행기관 등에 정확히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 \* 대상자 안내문, 대상자 이관계획,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바우처) 종료에 따른 조치사항 등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
4. 이에 따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관련 지침(수행관련 채용관련 지침 등은 추후 교부 예정) 및 관련 서식 등을 교부하오니 관련내용을 숙지하시어 수행기관 공모 심사 위탁계약 등을 적시에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안내 1부,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관련 지자체 준비지침 1부,  
 3. 수행기관 선정 심사표(대외주의) 1부,  
 4. 수행기관 신청서 등 서식 1부. 끝. ▣

##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항원시장(노인장애인과함), 진주시장(노인장애인과함), 진주시(장애인복지정책과함), 통영시장(노인장애인복지과함), 사천시장(사회복지과함), 김해시장(노인장애인과함), 함안시장(사회복지과함), 거제시장(사회복지과함), 양산시(사회복지과함), 의령군수(주민생활지원과함), 함양군수(주민복지과함), 함녕군수(노인여성아로과함), 고령군수(복지지원과함), 남해군수(주민복지과함), 하동군수(주민합동과함), 산청군수(주민복지과함), 함양군수(복지정책과함), 거창군수(합동나눔과함), 함안군수(주민복지과함)

★주무관 **우예빈** 노인복지담당 민재일 저출생고령사 대책 2019. 9. 9.  
최경희관 장재희

발부자  
시할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 (2019. 9. 9.) 경우 합동나눔과-45185 (2019. 9. 10.)  
-18882

주 51154 경상남도 함흥시 의항로 중앙대로 300, 경상남도청 (사할) / <http://gyeongsang.go.kr>

전화번호 055-211-5188 / 팩스번호 055-211-5159 / [wooyebin19@korea.kr](mailto:wooyebin19@korea.kr) / 부록페이지(B)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문자민으로 문자제출 '문서24'

## 거창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공고(안)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군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돌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4일

#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 사업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 사업내용

- 기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통합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 안전 확인, 건강관리,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욕구·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권역별 사업추진 : 수행기관별 효과적인 사업 운영 및 접근성 확보(3권역 3개소)

구분	해당 권역	수행기관
1권역	거창읍(대평리, 김천리, 송정리, 장팔리, 정장리) 남상면, 남하면, 신원면	1개소
2권역	거창읍(대동리, 서변리, 동변리, 학리, 양평리) 주상면, 가조면, 가북면, 웅양면	1개소
3권역	거창읍(상림리, 중앙리, 가지리) 마리면, 위천면, 북상면, 고제면	1개소

○ 사업기간 : 2020. 1. 1. ~ 12. 31.(1년)

## 2. 신청자격

- **자격요건** : 관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 ※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관·지역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자활기업 등 시설, 그 외 다양한 형태의 시설 모두 가능(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의하여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참여 불가)
  - 동일 시군구 내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관내 방문요양급여 제공기관 전체의 방문요양 수급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장기요양 방문요양 제공규모 제한 기준》

- (대상) 동일 시군구 내 해당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시설 전체
- (기준) 각 시설이 수행기관 심사시점 기준 최근 6개월간 평균 방문요양 수급자 수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적용일: '20. 1. 1.)
  - ※ 20% 이상 감축하는 경우 심사배점을 달리 함.

### - 권역별 수행기관 모집

- ※ 하나의 법인에서 1개 권역별 1개 시설만 공모에 참여 가능, 복수의 다른 권역에 각각 다른 시설로 공모 참여 가능

- **시설기준** :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상담공간, 프로그램실을 갖춰야 함.

확보필요공간	기 준	규 모
사무공간	전용공간	기관의 사정과 원활한 사업수행을 고려하여 판단
상담공간	전용공간	
프로그램실	전용공간 또는 별도 공간활용계획 마련 ※ 별도의 공간활용계획 마련 시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함.(예를 들면 종합복지센터 프로그램실 연간 대여 계획 등)	최소 10인 이상이 활동 가능한 공간으로 프로그램의 목적에 부합 가능 여부 판단

### 3. 신청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 10. 4.(금) ~ 2019. 10. 18.(금)
- 접수기간 : 2019. 10. 14.(월) ~ 2019. 10. 18.(금)
- 접수방법 : 방문 접수(토, 일요일 법정공휴일 제외)  
※ 근무시간(09:00~18:00)내에만 접수함. 마감일 18시까지 접수 분에 한함
- 접 수 처 : 거창군청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 055-940-3121)

### 4. 제출서류

- 운영 신청서 1부
- 법인 일반현황 1부
- 사업계획서 1부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사회복지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신고필증) 1부
- 방문요양급여 제공규모 조치계획서(해당하는 경우) 1부
- 약약서 1부

### 5. 선정기준 및 결과통보

- 선정기준 : 사업계획의 타당성, 공공성, 지역사회네트워크(지역자원 발굴·연계),  
효과적인 사업수행능력(시설기준, 유사사업 수행경험, 전문성 등)  
※ 최소 기준 점수(40점이상) 이상 충족 시 선정함.
- 선정방법 : (가)거창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권역별 신청자가 1개 기관(법인)의 경우 종합검토 후 선정여부 결정
  - 권역별 신청자가 2개 기관(법인)이상일 경우, 심사기준표에 의한 다득점 신청자 선정
  - 특정권역에 신청이 밀집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하여 선정되는 경우 다른 권역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결과통보

- 발표일 : 2019. 10월중(예정), 개별통보 또는 거창군청 홈페이지 게재
- 사업수행 위탁관리 협약 및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 체결 후 수행기관 확정

## 6. 기타사항

- 수행기관 선정심사는 제출된 서류로 실시하므로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이외에 추가 자료 요구 시 이를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행기관으로 추진의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표 등에 대한 면접 또는 설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허위사실 기재 등 부정한 사항 발견 시 심의에서 제외하고, 선정된 뒤 발견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합니다.
  - 선정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지 확인(사무실, 사업 운영 장소) 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시에 제출한 모든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사업신청서 접수는 2019. 10. 18.(금) 18:00까지이며 시간 경과 시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심의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는 이와 관련하여 거창군 또는 제3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거창군청 행정복지국 행복나눔과 노인복지담당(☎940-3121)로 연락 바랍니다.
- ※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9~123
----------	----------

제출일자 : 2019. 11.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2019.12.31.) 및 2020년부터 여성가족부의 권고사항에 따라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 지원서비스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사업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운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위탁대상 :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길 170

다. 사업내용

-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교육·상담·문화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 아이돌봄서비스, 가족관계 개선, 부모역할 지원 등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라.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마.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바. 수탁자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 단체

### 3.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운영 함으로써,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다양한 통합서비스 제공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증진을 위함

#### 나.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제22조

#### 다. 추진일정

- 군의회 동의 : 2019. 11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2019. 11. 15. ~ 11. 29.
-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19. 12월 중
- 지정 및 위탁계약 체결 : 12월 중

라. 소요예산 : 292백만원(국비146 도비43 군비103)

마.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 -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위탁운영추진계획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2019.12.31.)예정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가족의 유형별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함.

## I 관련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2019년 가족사업안내 / 여성가족부 지침

## II 추진배경

- 거창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탁기관 만료 : 2019. 12. 31.
- 여성가족부 권고 : ‘20년까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 -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포괄적으로 제공  
※ 2020년 도내 18개 시·군 모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 운영 추진

## III 추진방향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으로 투명성 확보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통합서비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능력 고려
- 공정한 심사를 위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여 심의·결정

## IV

## 위탁개요

### □ 위탁대상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비 고
거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거창읍 강남로 1길 170 1층 (구 보건소)	214.61m <sup>2</sup>	

### □ 현 위탁체 현황

수탁기관	대 표	시설장	주 소	비고
거창기독교청년회 (거창YMCA)	허 운	조미금	거창읍 강변로 87	

※ 최초 운영 : 2008. 1. 31. / 거창기독교청년회(거창YMCA) 위탁

○ 위탁기간 : 2018. 1. 1. ~ 2019. 12. 31.(2년)

○ 2019년 예산 : 531,031천원

○ 위탁사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반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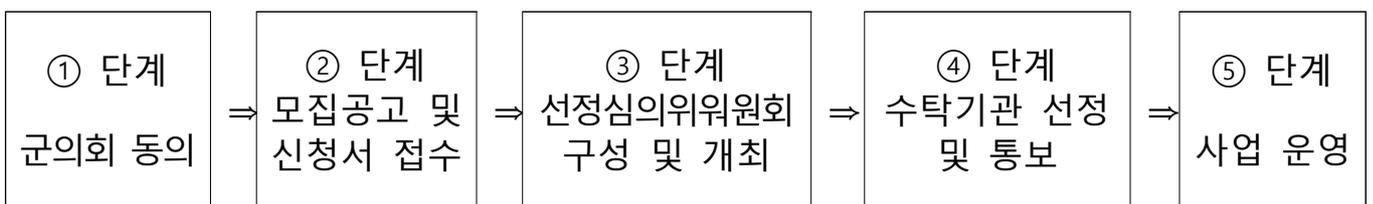
□ 위탁사유 : 위탁기간 만료

□ **위탁기간 : 2020. 1. 1.~ 2022. 12. 31.(3년)**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사무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 위탁 추진절차



###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자치사무에 대한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19. 11월 임시회

### □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19. 11. 15. ~ 11. 29.(15일간)
- 접수기간 : 2019. 11. 20. ~ 11. 29.(10일간)
-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등
- 공고내용 : 대상시설, 위탁기간, 신청자격, 구비서류, 선정방법 등
- 신청자격
  -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익법인
  - 「비영리법인단체지원법」 제2조에 의한 비영리단체
- 신청제외자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및 관련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 법인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았거나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실체가 없는 법인 등

○ 위탁사무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사업영역	기본기본사업	비 고
가족관계	부모역할 지원(임신·출산부모지원, 영유아기 부모 지원, 학부모지원, 혼례가치교육, 아버지역할지원) 부부역할지원 (부부갈등예방·해결지원, 노년기 부부지원), 이혼전·후 가족지원, 다문화가족관계 향상지원, 다문화가족이중언어환경 조성, 다문화가족자녀성장지원, 가족상담	교육, 상담(정보제공 및 초기상담), 문화프로그램 등
가족돌봄	가족의역량강화지원, 다문화가족 방문서비스	교육, 상담(정보제공+ 초기상담→전문상담)돌봄 미 파견, 사례관리 등
가족생활	맞벌이가정, 일·가정의 양립지원,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교육, 상담, 정보제공, 문화프로그램 등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가족봉사단(다문화가족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공간 운영, 가족 사랑의 날,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 인식 개선 및 공동체 의식,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모임, 활동, 문화프로그램 등
별도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한국어교육사업,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2019년 건강가족지원사업 안내 지침 영역별 사업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구성인원 : 7명이내(위원장 포함)
- 위원구성 : 관련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위 원 장 : 위원 중에서 지명
- 심의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일 시 : 2019. 12월 중
- 장 소 : 군청 중회의실
- 심의위원 :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 심의방법 : 서류심사, 사업계획 설명(PPT), 질의응답
- 심사기준

항목(5개부분)	점수(100점)	심사내용(16개항목)
1. 법인 적격성	10	- 유형 및 설립목적 - 적격성
2. 재정능력 및 공신력	20	- 보유자산(부동산, 동산 구분) - 지역사회내 공신력 제고방안 -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등
3. 사업운영·실적능력	30	- 기관대표의 이사회의 적합성 - 운영실적, 전문성 - 재정운영 및 투자계획의 타당성
4. 운영계획의 적정성	30	- 사업계획의 전문성 및 타당성 - 사업운영의 전문성. 재정책충방안의 타당성 - 지역사회 자원원방안
5. 센터장 전문성	10	- 센터장의 전문성과 운영의지

○ 선정방법

- 위탁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발표자의 PPT설명을 듣고 심사기준표에 의거 위원들이 심사
- 심사기준표에 의한 위원별 점수를 합산, 평균점수 60점 이상이면 수탁자로 결정
- 심사결과 6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위탁계약 체결 : 2019. 12월중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계약방법 : 위탁운영 약정서에 따라 계약 체결
- 계약조건 :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 고용 유지

## VI 행정사항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19. 10월
- 모집공고 및 접수 : 2019. 11월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별도계획 수립) : 2019. 12월

## [관계법령]

###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15.>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 건강가정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 3. 24., 2008. 2. 29., 2010. 1. 18.>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2. 2. 1.]

## □ 건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9~124
----------	----------

제출일자 : 2019. 11. .  
제 출 자 : 거 창 군

## 1. 요구이유

거창 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의 민간위탁계약이 201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한 위·수탁계약 절차 이행코자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춘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게 테니스장을 위탁운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가. 대상사무 :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의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나. 시설현황

○ 테니스장

계	테니스장		부대시설		
	인조잔디코트	하드코트	관리사무소	조명시설	펜스시설
12면	6면	6면	1층 140.55m <sup>2</sup>	12개	7829m <sup>2</sup>



- 다. 위탁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
- 라. 수탁자격 :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
- 마.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바. 예산지원 : 없음(테니스장 사용료로 운영)

### 3. 참고사항

#### 가. 민간위탁 운영의 필요성

테니스장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고 사업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운영을 함으로써 군민여가생활의 개선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

#### 나. 향후계획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2019년 11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6~9명) : 2019년 12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결정 : 2019년 12월
- 위탁계약 체결 : 2019년 12월
- 위탁운영 : 2020년 1월 1일

#### 다. 위탁운영 선정계획 : 따로 붙임

#### 라.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수탁자격 및 기간)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관리위탁), 제25조 준용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준용

#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민간위탁계획

## □ 배 경

-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의 민간위탁계약이 2019년 12월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근거한 위·수탁계약 절차이행

## □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거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23조(체육시설 위탁·위임)

## □ 위탁대상

- 거창스포츠파크 테니스장
  - 테니스장 운영
  - 테니스장 건물 및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 □ 위탁현황

- 테니스장
  - 시설명: 거창스포츠파크 내 테니스장
  -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양평리 1239-50번지 일원
  - 시설규모

계	테니스장		부대시설		
	양투카코트	하드코트	관리사무소	조명시설	펜스시설
12면	6면	6면	1층 140.55㎡	12개	7,829㎡

## □ 추진계획

- 위탁기간 : 3년 이내 (1회 재 계약가능)
  
- 위탁자 선정방침
  -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심의 결정
    - ※ 현 위탁 수행자 단독 신청 할 경우 서면 심의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부적격 시 재공고
  
- 수탁기관 모집 : 공개모집
  - 공 고 : 거창군 홈페이지 및 도내 일간지
  
- 수탁자격 : 경기단체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
  
- 추진일정
  - 의회동의 : 2019년 11월
  - 수탁자 모집공고 : 2019년 11월
  - 수탁자 선정 심의 위원회 구성 : 2019년 12월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 선정 : 2019년 12월
  - 위·수탁 계약체결 : 2019년 12월
  - 협약서 공증절차이행 : 2019년 12월
  - 시설 인계·인수 및 운영 : 2020년 1월

#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9-125
----------	----------

제출일자 : 2019. 11.  
제 출 자 : 거창군수

## 1. 요구이유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부지조성이 완료됨('19.10.2.) 따라 주기장의 효율적 관리·운영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민간위탁

나. 주기장 현황

명 칭	거창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위 치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394번지 일원 (구, 88고속도로 폐도부지)				
면 적	6,310㎡ (1,908평)	건축면적	99.75m (30평)	주기면수	약 120대
시설물	관리동 1동 (싱크대, 신발장, 환풍기 2, 수도 2, 전기쿡탑 2구)				

## 다. 운영계획

- 운영방법 : 민간위탁(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
  - 근거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제1항,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수탁자 조건 : 거창 군내에 주소를 둔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
- 민간위탁 배경
  - 수요자 중심의 공영주기장 관리·운영으로 행정능률 향상
  - 건설기계 운행자의 자발적 주기 유도로 주택가도로변 등 불법주기 개선
- 수탁단체(자) 선정 : 공개모집
  -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수탁단체(자) 평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평가(정량+정성)

## 라. 공유재산 관리위탁

○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위탁(공개모집)

- 근거 : 공유재산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1호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제5항

○ 행정재산 사용료 부과(부과대상 : 수탁단체)

- 사용료 :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 가격기준 : (토지)공시지가, (관리동) 감정평가

- 근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제1호

○ 사용기간 : 2년(1회에 한해 갱신 가능)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5년 이내)

※ 최초 운영에 따른 문제점 보완 등을 위해 사용기간 2년으로 조정

## 마. 향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심의 : '19. 10.~11.
- 공영주기장 운영계획 인가 신청(군→道) : '19. 10.
- 민간위탁사무 군 의회 동의 : '19. 10.~11.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6~9인) : '19. 11.
- 공영주기장 수탁단체(자) 모집 공고 : '19. 11.
- 공영주기장 수탁단체(자) 선정 및 협약체결 : '19. 12.
- 행정재산 관리위탁, 민간위탁 공보게재 : '20. 1.
- 공영주기장 운영(예정) : '20. 1.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참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9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제19조제4항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9조, 제24조

#### 나.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붙임2 참조

□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공영주기장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주기장(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면 공영주기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미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공고해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5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2015.12.10.)

제19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행정재산의 사용료율, 일시사용·수익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4조(대부료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의 목적에 사용하는 재산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 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4조(협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는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탁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위치도



현장사진





#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19~126
----------	----------

제출일자 : 2019. 11.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1. 요구이유

-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위탁기간이 2019. 12. 23.자 만료 도래 예정
- 민간위탁을 통해 관리·운영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와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능력을 갖춘 법인에게 『거창푸드 종합센터』 를 위탁운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시 설 명 : 거창푸드종합센터  
 나. 위 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다. 주요시설

계	1층				2층
	전시판매장	저온 저장고	선별장	화장실	
712.5㎡	180㎡ 판매대, 쇼케이스	107.8㎡ (4실)	162.2㎡ 컨베이어, 포장기 등	82.5㎡	180㎡ 사무실, 회의실

### 라. 위탁대상 사무범위

- 거창푸드 홍보 마케팅 활동
  - 농산물 순회수집, 가공, 판매
  - 소규모 직거래 장터 운영
  - 농가 생산자 조직 구성 교육 등 각종 보조사업
  - 위탁시설 관리 운영
  - 꾸러미 사업 참여농가 조직화
  - 기타 거창푸드 육성·발전을 위한 업무
- 마. 위탁기간 : 위수탁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
- 위탁기간 만료 시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위탁 여부 결정

바.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사. 소요예산 : 연 390,000천원 정도

-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로컬푸드 교육 및 홍보비 등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7조

나. 향후계획

- 수탁기관의 선정(공개모집) : 2019. 11월 중순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단체 결정 : 2019. 12월 초
- 위·수탁계약 체결 및 공증, 시설점검 : 2019. 12월 중순
- 수탁운영 실시 : 2019. 12. 24. ~

다. 위탁운영 계획 : 따로 붙임

# 거창푸드종합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I 위탁개요

### □ 위탁현황

- 위탁기간 : 2013. 12. 24. ~ 2019. 12. 23. / 6년
  - 1차(2013. 12. ~ 2016. 12), 2차(2016. 12. ~ 2019. 12.)
- 수탁자 : 거창공유농업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제열)
- 위탁내용
  - 거창푸드 홍보 마케팅 활동
  - 농산물 순회수집, 가공, 판매
  - 소규모 직거래 장터 운영
  - 농가 생산자 조직 구성 교육 등 각종 보조사업
- 위탁 지원액 : 1,356백만원

연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지원액(백만원)	120	160	250	250	250	326

### □ 시설현황

- 위치 : 거창군 거창읍 거함대로 3372
- 사업비 : 1,381백만원(도비 570, 군비 811)
- 주요시설

계	1층				2층
	전시판매장	저온 저장고	선별장	화장실	
712.5㎡	180㎡ 판매대, 쇼케이스	107.8㎡ (4실)	162.2㎡ 컨베이어, 포장기 등	82.5㎡	180㎡ 사무실, 회의실

## II 그간 운영연황

### ○ 주요 매출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별 성과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
	총매출	전시판매장	꾸러미	거창물	
계	3,543,976	2,062,301	260,831	2,009,901	
2014	297,823	131,422	21,470	144,931	-
2015	501,882	171,466	46,458	283,790	168%
2016	619,490	269,861	38,893	310,613	123%
2017	913,131	430,180	30,522	452,282	147%
2018	1,212,088	650,000	60,782	501,306	132%
2019	789,057	409,372	62,706	316,979	2019년 상반기

※ 2014년 위탁 첫 해 대비 2018년 매출액 406% 증가

### ○ 그간 성과

-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지역 농산물 홍보 효과 제고
- 농가 순회수집을 통해 영세농, 고령농 등 농산물 판로개척이 어려운 농가의 판로 확보 마련
- 농가 조직화를 통해 학교급식 등 공공 납품 기회 마련
-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하는 지역 농산물 소비 문화 형성
- 식생활 체험, 공동체지원농업 등 사업을 통해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의식 개선 및 관심 제고

### III

## 민간위탁 추진(안)

#### ○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내지 제16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위탁운영)

#### ○ 위탁범위

- 거창푸드 홍보 마케팅 활동
- 농산물 순회수집, 가공, 판매
- 소규모 직거래 장터 운영
- 농가 생산자 조직 구성 교육 등 각종 보조사업
- 위탁시설 관리 운영
- 꾸러미 사업 참여농가 조직화
- 기타 거창푸드 육성·발전을 위한 업무

○ 위탁기간 : 2019. 12. 24 ~ 2022. 12. 23. / 3년

○ 수탁자격 : 공고일 현재 거창군 관내에 주소를 둔 비영리법인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공고기간 : 2019년 11월말
- 공고내용 : 시설의 개요, 사업현황, 위탁기간, 신청서 접수, 선정기준 등
- 공고방법 : 지역신문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등
- 심사일자/선정통보 : 2019. 12. 13.(금) / 2019. 12. 17.(화)

○ 수탁기관 선정기준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 제2항 반영
-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 종합적 검토하여 선정

○ 민간위탁심의 위원 선정

- 모집기간 : 2019년 12월초
- 모집인원 : 6명 ~ 8명 정도
- 모집대상 : 군 소속 공무원, 대학교수, 변호사 등
- 근거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심의위)

## IV 기대효과

- 전문기관 위탁으로 로컬푸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 기대

## 관 계 법 령

### 【거창푸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29조 (운영위탁)

- ①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 ②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확보,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 ④ 제3항의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수탁기간, 유통전문인력 확보,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 거창푸드종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갱신할 수 있다.
- ⑥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 ⑦ 군수는 거창푸드종합센터 운영상 필요한 농산물 확보 등의 비용을 운전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보유금액과 사용내역 등이 포함된 운전자금 관리현황 보고서를 매년 1회 이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 **제 5조 (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심사기준 및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등을 명시하여 공고한다.(전문개정2013.6.12)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하도록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적격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13.6.12)

###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수탁기관 선정,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시 적정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4분의 3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개정2014.5.28)

2. 대학교수, 변호사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2014.5.28)

④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구성하고, 수탁기관 선정 및 평가 등이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민간위탁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개정 2013.6.12)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 부개정 2014.10.01)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 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식자재 조달대행(부분위탁) 연장 동의안

의안 번호	2019-127
----------	----------

제출일자 : 2019. 11.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1. 제안이유

가.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자재 수급을 효율적으로 대행하고 그간의 운영 노하우 활용을 위해 대행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대 행 기 관 : 거창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최 창 열)
- 연 장 기 간 : 2020. 2. 1. ~ 2023. 1. 31.(3년)
- 현)대행기간 : 2017. 2. 1. ~ 2020. 1. 31.(3년)

## 2. 운영 현황

가. 운영주체 : 거창군 직영(센터장: 농업기술센터소장)

- 대행기관 : 거창축협(운영팀 5명, 소분팀 7명, 배송팀 6명)

나. 운영내용

- (거창군) 공급가격 결정, 식자재 계약(군↔학교), 물류 배송 지도·감독
- (거창축협) 식자재 구매·소분·배송 대행, 시설장비 관리

다. 예산지원 : 없음, 식자재 조달수수료(10~13%)로 인건비 등 운영비 충당

라. 그간 위탁·대행 현황

- 2012~2016년 : 거창사과원예협동조합(위탁)
- 2017~2020년 : 거창축산업협동조합(대행)

## 3. 시설현황

가. 시 설 명 : 거창군학교급식지원센터

나. 위 치 : 거창군 거함대로 3372-30

나. 준 공 일 : 2011. 11. 12

라. 시설규모 : 4,017m<sup>2</sup> / 건축면적 : 1,119m<sup>2</sup>

- (1층) 입하장, 전처리시설, 소포장실, 출하장
- (2층) 사무실, 회의실, 전산실 등

#### 4. 참고자료

##### 가. 경영분석

(단위 : 천원)

년도	월	수입			지출			손익
		합계	매출	기타	합계	매입	경비	
2017		6,276,332	6,268,112	8,220	6,271,971	5,616,287	655,684	4,361
2018		<b>6,348,490</b>	<b>6,345,704</b>	<b>2,794</b>	<b>6,363,528</b>	<b>5,656,571</b>	<b>706,945</b>	<b>-15,030</b>
2019	소계	4,266,377	4,256,668	9,707	4,286,410	3,792,541	493,869	-20,033
	1월	108,070	104,192	3,878	130,549	92,732	37,817	-22,479
	2월	213,612	213,432	180	228,299	191,779	36,520	-14,687
	3월	711,053	710,866	187	713,788	633,430	80,358	-2,735
	4월	780,490	778,803	1,687	761,754	694,013	67,741	18,736
	5월	769,148	768,852	296	755,001	685,802	69,199	14,147
	6월	699,929	699,657	272	695,563	623,256	72,307	4,366
	7월	597,749	594,642	3,107	606,584	528,105	78,479	-8,835
	8월	386,328	386,224	100	394,872	343,424	51,448	-8,546

##### 나. 식재료 공급현황

연도	구분	금액(A)	구입처		관내업체 사용율(%) (B/A)X100
			관내(B)	관외(C)	
2017	합계	<b>6,268,112</b>	<b>3,572,870</b>	<b>2,695,242</b>	<b>57%</b>
	농산물	1,828,792	1,115,790	713,002	61%
	수산물	607,229	67,709	539,520	11%
	축산물	1,533,625	1,409,450	124,175	92%
	공산품	2,298,466	979,921	1,318,545	42%
2018	합계	<b>6,345,704</b>	<b>3,875,452</b>	<b>2,470,252</b>	<b>61%</b>
	농산물	1,960,233	1,221,840	738,393	62%
	수산물	601,268	104,162	497,106	17%
	축산물	1,563,596	1,485,436	78,160	95%
	공산품	2,220,607	1,064,014	1,156,593	48%
2019. (1월~8월)	합계	<b>4,256,668</b>	<b>2,616,236</b>	<b>1,640,432</b>	<b>61%</b>
	농산물	1,251,438	818,842	432,596	65%
	수산물	393,833	68,346	325,487	17%
	축산물	1,001,998	948,909	53,089	95%
	공산품	1,609,399	780,139	829,260	48%

##### 다. 관련조례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17조, 제18조
- 거창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

## 학교급식지원센터 대행(부분위탁) 관련 조례

### 【거창군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학교급식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 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공공성과 공익적 기능을 추구하는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배농가·생산자단체와의 재배계약 체결에 따른 생산계획 조정 및 품목선정
2. 유통 및 공급 관리, 물품 등록, 전산 수주 및 발주 관리
3. 거창교육지원청 및 관련 유관 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건강평가 및 홍보
4. 위원회, 거창교육지원청, 지원대상 시설의 급식소위원회간 급식업무 협의
5.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군수는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할 경우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친환경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 및 학교급식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종합교육시설
5. 우수 식재료 생산 또는 학교급식 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군수는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사회적기업 등의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1. 급식지원센터 운영의 총괄과 대외협력업무 추진을 위한 급식지원센터장
2. 교육·홍보, 생산·물류·유통, 전산재무 등 관리요원

⑥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군수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군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개정 2013.6.12)

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6조에 따른 거창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6.12)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도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이 경우 자치사무에 있어 같은 수탁기관에 재계약 할 때에도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및 후단신설 2013.6.12)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6.12.)

**제9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및 협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3.6.12.)

## 【거창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에 관한 조례】

### 제1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군수가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에 의한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른다.

1. 재산의 표시, 사용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 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항전부개정 2014.10.01)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2014.10.01)
-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관리수탁자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위탁계약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항전부개정 2014.10.01 2015.12.10.)
-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2014.10.01. 2015.12.10.)
-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와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2014.10.01)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군이 직접 시행한다.

### 제18조(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하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2014.10.01)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2014.10.01)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2014.10.01)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호신설 2014.10.01)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호이동 2014.10.01.)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안

의안 번호	2019-128
----------	----------

제출일자 : 2019. 11.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교육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665,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20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2020년	665	665	665			665	

- 사업내용 :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등

### 나. 부서의견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군 장학사업의 출연금 지원으로,
- 거창군의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함으로써 거창의 교육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붙임 1

## 4. 참고사항

- 출연기관 현황 : 붙임 2

## 관 계 법 령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행정복지국 인구교육과) (시행일 : 2019.04.03)

( 제정) 2005.10.05 조례 제1761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28호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부칙 제4조  
(일부개정) 2019.04.03 조례 제24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학사업 등을 시행할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의 설립과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제4조 삭제<2019.4.3.>

제5조 삭제<2019.4.3.>

제6조 삭제<2019.4.3.>

제7조(사업) ① 장학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

2. 지역인재 육성·지원사업
3. 교육여건 개선사업
4. 국내·외 청소년과의 교류사업
5. 그 밖에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장학회는 제1항의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지원)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타조례개정 2014.12.31.)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지원) 군수는 장학회에서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장학회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장학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인력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인력지원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군수는 장학회의 사업수행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장학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2019.4.3.>

부칙 <전부개정 2011.01.05,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228호 개정 2014.12.31.)

제1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 「거창군 보조금 관리조례」 ”를 “ 「거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로 한다.

부칙(조례 제2496호 201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근거	법 률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전화번호 : 055-940-8812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홈페이지 : www.gcdream.kr			
주요연혁	설립연도 : 2005. 12. 16.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 : 2009년						
인원현황 (‘19. 9.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7명		0명	17명			
임 원 (‘19. 9.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구○○	거창군수	당연직(재직기간)			
	상임이사	신○○	前) 민주평통회장	2018.12.03. ~ 2020.12.02.			
	비상임이사	이○○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	당연직(재직기간)			
		이○○	아림노인요양원 원장	2017.12.20. ~ 2019.12.19.			
		송○○	前) 창호초등학교 교장	2017.12.20. ~ 2019.12.19.			
		김○○	덕유농산 대표	2017.12.20. ~ 2019.12.19.			
		오○○	前) 거창중학교 교장	2018.12.03. ~ 2020.12.02.			
		최○○	아림인쇄사 대표	2018.12.03. ~ 2020.12.02.			
		백○○	거창한뉴스 대표	2018.08.22. ~ 2020.08.21.			
		양○○	前) 의용소방연합회 회장	2017.12.20. ~ 2019.12.19.			
		백○○	거창농산 대표	2017.12.20. ~ 2019.12.19.			
		송○○	거창군이장자율협의회 회장	2018.08.22. ~ 2019.12.19.			
		김○○	거창푸드종합센터 이사장	2017.12.20. ~ 2019.12.19.			
		이○○	前) 함께하는 거창 대표	2017.12.20. ~ 2019.12.19.			
		백○○	前) 교장	2018.01.03. ~ 2020.01.02.			
	감 사	유○○	푸른산내들 이사	2017.12.20. ~ 2019.12.19.			
		표○○	前) YMCA 이사장	2017.12.20. ~ 2019.12.19.			
	주요기능	-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					
	자본금 <sup>1)</sup> (단위:백만원)		10,00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1,421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8.12.31기준	자산	10,686 (자산 총액)
	예산액 <sup>2)</sup>	11,083	11,122	11,299		부채	0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sup>3)</sup>	665	665	665		자본 <sup>1)</sup>	10,686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8.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234				1,038		196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안 번호	2019~129
----------	----------

제출일자 : 2019. 11.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이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지원함.

기획서)

## 2. 주요내용

###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 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대 상 : 한국지방세연구원(대표 공석)
- 사 업 비 : 4,038천원  
- 2020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18년 예산액	2019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지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0년	4,012	4,038	4,038			4,038	

- 산출기초 : '18년 결산 보통세 26,925,021천원 × 1.5/10,000  
= 4,038천원

- 사업내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나. 부서의견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운영과 관련된 중요사항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수입·지출 결산은 외부감사의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3. 관련법규 및 조례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4.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붙임 1
- 출연기관 현황 : 붙임 2
- 기타 참고자료(출연금 배정 협조공문 등) : 붙임 3

# 관 계 법 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39호, 2018. 12. 24., 일부개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849호, 2019. 6. 11., 타법개정]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 【 출연기관 현황 】

##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제151조 내지 제152조 시행령 :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94조			전화번호 : 02-2071-2798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19. 6 현재)	계		정규직	비정규직			
	65명(11명)		65명 (11명)	-			
입 원 (‘19. 6 현재)	직 책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임 기			
	이 사 장	허 ○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17.12. 22. ~ 2020.12. 21.			
	부이사장	황 ○ ○	충청남도 논산시장	2019. 2. 28. ~ 2020. 2. 27.			
	원 장	공 석	한국지방세연구원장	당 연 직			
	이 사	이 ○ ○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당 연 직			
	이 사	김 ○ ○	울산광역시 기획조정실장	2019. 2. 28.~2020. 2. 27			
	이 사	이 ○ ○	세종특별자치시 기획조정실장	2019. 2. 28.~2020. 2. 27			
	이 사	김 ○ ○	경기도 자치행정국장	2019. 2. 28.~2020. 2. 27			
	이 사	김 ○ ○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2019. 2. 28.~2020. 2. 27			
	이 사	박 ○ ○	인천광역시 계양구 부구청장	2019. 2. 28.~2020. 2. 27			
	이 사	김 ○ ○	충청북도 청주시 부시장	2019. 2. 28.~2020. 2. 27			
	이 사	윤 ○ ○	전라북도 무주군 부군수	2019. 2. 28.~2020. 2. 27			
	이 사	금 ○ ○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9. 2. 28.~2020. 2. 27			
	감 사	김 ○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 연 직			
	감 사	노 ○ ○	전라북도 순창군 부군수	2018. 2. 28.~2020. 2. 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68,756 (2011~2019)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8.12.31기준	자산	18,188 (자산 총액)
	예산액	9,986	13,719	13,164		부채	4,45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7,570	12,102	10,844		자본	13,732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8.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1,166			8,603		2,563	



## 한국지방세연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사전심의를 위한 관련자료 송부

---

1. 귀 자치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출연동의안 심의 등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한국지방세연구원 2020년 출연금 사전심의 참고자료 1부2. (부록) 지방자치단체에 기여한 연구원 성과산정기준 1부. 끝.

## 한국지방세연구원장

수신자 지자체 243

주임	대리	경영지원실장	부원장	전결 2019. 6. 18.
협조자				
시행	경영지원실-1378	(2019. 6. 18.)	접수	재무과-17036 (2019. 6. 18.)
우	06788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한국지방세연구원	/ <a href="http://www.kilf.re.kr">http://www.kilf.re.kr</a>	
전화번호	02-2071-2726	팩스번호	02-2071-2722	/ <a href="mailto:ouj900906@kilf.re.kr">ouj900906@kilf.re.kr</a> / 대국민 공개



#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972(2019. 9. 9.)호와 관련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확정내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시·군에서는 2020년도 예산편성에 차질없이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0년 출연금 집계표 1부. 끝.

##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창원시장(세정과장), 진주시장(세무과장), 통영시장(세무과장), 사천시장(세무과장), 김해시장(세무과장), 밀양시장(세무과장), 거제시장(세무과장), 양산시장(세무과장), 의령군수(재무과장), 함안군수(세무회계과장), 창녕군수(재무과장), 고성군수(재무과장), 남해군수(재무과장), 하동군수(재정관리과장), 산청군수(재무과장), 함양군수(재무과장), 거창군수(재무과장), 합천군수(재무과장)

주무관	세정담당	세정과장	전결 2019. 9. 9.
협조자			
시행	세정과-11414	(2019. 9. 9.)	접수 재무과-25795 (2019. 9. 11.)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 <a href="http://gyeongnam.go.kr">http://gyeongnam.go.kr</a>
전화번호	055-211-3717	팩스번호 055-211-3719	/ <a href="mailto:ysjliy@korea.kr">ysjliy@korea.kr</a> / 대국민 공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온라인으로 문서제출 "문서24"			

#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출연안

의안 번호	2019~130
----------	----------

제출일자 : 2019. 11.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지방출자출연법 제20조,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대 상 : 거창문화재단(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691,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20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 타
2020년	906	691	691			691	

### ○ 사업내용

-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직원 4명, 기간제 2명) 지원
- 문화재단 사무국 경상경비(공공요금, 시설유지비 등) 지원

### 나. 부서의견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해 2017년 설립이후 운영 4년차에 접어드는 거창문화재단은 각종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및 한마당대축제 기획·운영 업무를 비롯하여
- 지역문화 발전과 주민들의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산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거창문화센터 관리 등을 위한 예산을 출연하여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3. 관련법규 및 조례

-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 제1항, 제20조 제1항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제1항, 제2항

### 4. 참고사항

- 출연금 개요 :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현황
- 전년도와 달라진 점 :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
-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
- 도내 문화재단 예산현황 비교

##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행정복지국 문화관광과) (시행일 : 2016.11.23.)

제4조(운영재원 등)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시설운영 등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출연기관 현황 】**

**거창문화재단**

설립근거	법률 : 「민법 제32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조례 : 「거창군 거창문화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전화번호 : 055-940-8460 홈페이지 : www.gccf.or.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2017. 1. 12.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9. 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0명		6명	4명			
임원 (19. 9.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現 거창군수	재직기간(2018.7.2.~현재)			
	비상임이사	이○○	現 거창군 문화관광과장	재직기간(2019.1.1.~현재)			
		이○○	前 아립예술제위원회 위원장	2년(2019.1.18.~2021.1.17.)			
		이○○	거창문화원장	2년(2019.1.18.~2021.1.17.)			
		민○○	거창예총 회장	2년(2019.1.18.~2021.1.17.)			
		박○○	거창전수관장	2년(2019.1.18.~2021.1.17.)			
		신○○	前거창농협조합장	2년(2019.1.18.~2021.1.17.)			
		곽○○	거창문화원 임원	2년(2019.1.18.~2021.1.17.)			
		백○○	아립예술제위원회 감사	2년(2019.1.18.~2021.1.17.)			
		김○○	거창문화원 이사	2년(2019.1.18.~2021.1.17.)			
		이○○	경남일보 차장	2년(2019.1.18.~2021.1.17.)			
		신○○	사색의향기 문화원 거창지부장	2년(2019.1.18.~2021.1.17.)			
		김○○	거창예총 수석부회장	2년(2019.1.18.~2021.1.17.)			
		정○○	거창미협 윤리이사	2년(2019.1.18.~2021.1.17.)			
감사	강○○	現 거창군 재무과장	재직기간(2019.7.19.~현재)				
	이○○	세무사	2년(2019.1.18.~2021.1.17.)				
주요기능	문화공연 및 전시 기획·운영, 문화아카데미 운영, 거창한마당대축제 기획·운영 등						
자본금 <sup>1)</sup> (단위:백만원)		236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50 (2017년 설립 시 기본재산 출연)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8.12.31기준	자산	425 (자산 총액)
	예산액 <sup>2)</sup>	3,458	2,265	2,681		부채	188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sup>3)</sup>	3,095	1,907	2,557		자본 <sup>1)</sup>	237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8. 12. 31.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015				2,080		-61

# 참 고 사 항

## ① 출연금 개요 : 거창문화재단 운영 지원사업 [계속사업]

- 사업목적 : 문화예술 정책의 전문화 및 효율화를 위한 차질 없는 문화재단 운영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사업장소 : 거창문화재단 일원(거창문화센터)
- 사업비 : 691,000천원 / 출연금
- 증감사유 : 감)215,300천원 / 전년 당초예산 대비
  - 직원 4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감축 편성 (감158,329천원)
  - ※ 미채용 인원(4명) : 사무처장 1명, 문화사업2단 3명(단장 1, 단원 2)
  - 여비, 업무추진비, 관서업무비 과다 편성분 삭감 (56,971천원)
- 사업내용 : 문화재단 사무국 인건비, 경상경비(운영비, 관리비 등)

세부사업	2020년	2019년	사업내용
문화재단 운영 지원	691,000	906,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건비 : 280,21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 원 : 220,689천원 / 4명(문화사업1단장 1, 단원 3)</li> <li>* 단원 : 무대예술전문인(조명, 음향) 2명, 문화사업업무 1명</li> <li>- 기간제 : 59,521천원 / 2명(환경관리 1, 사무보조 1)</li> </ul> </li> <li>○ 경상경비 : 410,79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리후생비 : 27,400천원 / 4대보험, 직급보조비 등</li> <li>- 일반운영비 : 137,490천원 / 소모품, 임차료, 당직비 등</li> <li>- 공공요금 : 139,651천원 / 우편, 상하수도, 전기료 등</li> <li>- 시설유지비 : 35,000천원 / 정화조, 공조기 청소 등</li> <li>- 회의운영비 : 13,930천원 /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li> <li>- 여비교통비 : 37,319천원 / 국내여비 및 교통비 등</li> <li>- 업무추진비 : 16,000천원 / 시책업무 추진</li> <li>- 관서업무비 : 4,000천원 / 재단 운영 업무추진</li> </ul> </li> </ul>

## ② 최근 3년간 운영비 지원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내용
지원금액	544,130	544,130	906,300	691,000	재단 사무국
전년대비증감	-	-	증) 362,170	감) 215,300	인건비,
예산과목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307-03)			출연금(306-01)	시설유지비 등

### ③ 전년도와 달라진 점 :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

#### ○ 전환 필요성

- 거창문화재단은 2017년 1월 설립되어 3년간 운영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뮤지컬, 가요 콘서트 등)과 전시로 군민들의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매년 색다른 콘셉트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거창한마당대축제를 군민화합의 장으로 이끄는 등 여러 분야에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음
- 이에 재단 설립 초기에 군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보조금으로 일괄 지원하던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등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인력 및 시설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같은 이유로 도내 타 문화재단 모두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 중임

#### ○ 전환 시 문제점

- 재단의 예산 집행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예산 집행 투명성 저하 우려

#### ○ 해결방안

- 현재 공무원이 파견되어 있으므로 예산집행 투명성 보장
- 출연금에 대하여는 정산 의무 없으나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문화관광과에서 사후정산 지속 운영, 관리 감독 철저

### ④ 출연금과 보조금의 차이

구 분	출연금	보조금
정 의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 법률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	지자체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등
일반법적 근거	없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별법적 근거	지방출자출연금법 제4조	필수요소 아님
용도 지정	사용 용도 지정 없음 (단, 목적 출연금만 용도 지정)	사용용도 지정 필수
예산과목	306-01(출연금)	307-03(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수입	재단 자체 수입으로 함	군으로 반환함

## 5 도내 문화재단 예산 비교 (2019년 당초예산 기준)

○ 보조금은 없으며, 출연금 및 경상적 위탁사업비 혼용 지원

(단위 : 천원)

기관명	지원성격	지원금액	내용(예산서 부기명)	부서
창원문화재단	출연금	13,680,000	- 재단 운영 13,480,000 - 예술작품 구입 200,000	문화예술과
김해문화재단	출연금	18,247,103	- 출연금 18,247,103	문화예술과
통영문화재단	출연금	2,851,298	- 인건비 1,638,106 - 운영비 372,624 - 통영국제음악당 시설비 840,568	문화예술과
	경상적위탁	1,506,550	- 통영국제음악제 1,210,000 -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140,000 - 윤이상동요제 50,000 - 꿈의오케스트라 운영지원 106,550	
사천문화재단	출연금	2,409,647	- 재단 출연금 2,409,647	문화관광과
밀양문화재단	출연금	5,441,093	- 재단 출연금 5,441,093	문화관광과
거창문화재단	보조금	906,300	- 재단 운영지원(인건비, 경상경비) 906,300	문화관광과
	경상적위탁	1,651,300	- 문화공연 및 전시 865,000 - 거창한마당대축제 786,300	

○ 우리 군은 통영시와 같이 운영비는 보조금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 그 외 문화공연 및 전시, 거창한마당대축제 등의 문화사업은 기존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그대로 유지할 계획임
- 문화공연 및 전시사업은 수익성 사업(대관료, 입장료)이므로 당해 수익금을 군으로 반환받기 위해 경상적 위탁사업으로 유지하는 것임(출연금으로 전환 시 군으로 수익금 반환 불가)



#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안 번호	2019~131
----------	----------

제출일자 : 2019. 11.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 주요내용

### 가. 출연 개요

- 근거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구철회)
- 사 업 비 : 250,000천원(출연 예정금액)

- 2020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				
			계	균 특	도 비	균 비	기 타
2020년	200	250	250			250	

- 사업내용
  - 거창군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컨설팅 지원

### 나. 부서의견

- 경영안정자금 융자한도액이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되고 경기침체로 인한 불안과 저이자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자금의 확보심리 등의 이유로 2019년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대출목표액이 100억원에서 150억으로 증액되어 지원되었고,
-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이 현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의 육성을 위하여 2020년 거창군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대출목표액을 200억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한 실정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도 2억원에서 2.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 3. 관련법규 및 조례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4. 참고사항

- 경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지원 협조 공문.

## 관 계 법 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출연기관 현황 】

경남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법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화번호: 1644-2900			
				홈페이지: www.gnsinbo.or.kr			
주요연혁	1996.06.05.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 2000.03.20. 경남신용보증재단 전환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			
인원현황 (‘19. 9. 16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104명		98명	6명			
임원 (‘19. 9. 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구**	前솔로몬저축은행 대표이사	‘18.11.1~‘20.10.31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이**	現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9.4.25~			
		김**	現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	‘18.4.24~			
		김**	現경남은행 창원영업본부장	‘19.6.1~‘21.5.31			
		한**	現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	‘19.6.1~‘21.5.31			
		김**	現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무이사	‘19.6.1~‘21.5.31			
		임**	前경남소상공인연합회장	‘19.6.1~‘21.5.31			
	감사	장**	現장** 회계사무소대표	‘18.9.1~‘20.8.31			
고문							
주요기능	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						
자본금 <sup>1)</sup> (단위:백만원)	201,313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77,437 (직전연도말 기준)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8.12.31기준	자산	241,711 (자산 총액)
	예산액 <sup>2)</sup>	53,153	57,530	70,989		부채	40,398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sup>3)</sup>	2,850	4,123	7,550		자본 <sup>1)</sup>	201,31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8. 12. 31. 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9,409			32,156		△12,747	

[붙임 3]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경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지원 협조 요청**

1.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한 귀 시군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도에서는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 보증**을 위해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지원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조례에 따라 공적 신용보증기관인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설립·운영 중입니다.
3. 그러나 지역경제 침체 장기화와 각종 특례보증 집중 지원에 따른 **누적된 손실 증가**로 재단의 **기본재산 잠식 및 보증공급 장애**가 예상됩니다.  
\* 손실금 추세 : ('17)△71.5억원 → ('18) △127.5억원 → ('19 추정) △214억원→ ('20 추정) △236억원
4. 이에, 우리 도에서는 '20년 道 출연금(30억 원 ⇒ 50억 원, 증 20억원) 확대를 위해 예산부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원활한 **보증공급을 위하여 각 시군의 적극적인 재단 출연을 요청** 하오니 2020년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년 출연금 조성계획 및 시군별 출연 필요금액(참고용) 1부. 끝.

##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창원시장(경제살리기과장), 진주시장(일자리경제과장), 통영시장(지역경제과장), 사천시장(지역경제과장), 김해시장(지역경제과장), 밀양시장(일자리경제과장), 거제시장(조선경제과장), 의령군수(일자리경제과장), 함안군수(미래산업과장), 창녕군수(일자리경제과장), 고성군수(일자리경제과장), 남해군수(지역활성과장), 산청군수(경제전략과장), 함양군수(일자리경제과장),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합천군수(경제교통과장), 양산시장(일자리경제과장), 하동군수(경제전략과장)

주무관 소상공인지원 담당 소상공인정책 전결 2019. 7. 9. 과장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과-5319 (2019. 7. 9.) 접수 경제교통과-76362 (2019. 7. 9.)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경남도청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3433 팩스번호 055-211-3419 / [gurumi@korea.kr](mailto:gurumi@korea.kr) / 대국민 공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온라인으로 문서제출 "문서24"

## 시군별 출연현황 및 필요금액 산정

(19.5.31기준, 단위 : 억원, 건)

구분	시군 출연금			'18. 道정책자금		총 보증잔액			대위변제액		
	'18년	'19년	'20년	이용액	건수	'17년	'18년	증감	'17년	'18년	증감
계	25	37	51	1,052	3,685	11,832	13,283	1,451	205	300	95
창원	5	8	11	507	1,508	4,160	4,565	405	72	101	29
김해	2	3	5.5	90	338	1,940	2,226	286	38	52	14
진주	2	3	4	107	462	1,446	1,597	151	20	24	4
양산	2	3	3.5	68	293	946	1,033	87	13	27	14
거제	2	2	3.5	71	270	939	1,098	159	17	42	25
통영	1	3	3	31	125	574	702	128	10	13	3
사천	1	2	2.5	38	128	379	424	45	5	7	2
밀양	1	1	2	23	96	192	215	23	4	5	1
함안	1	2	2.5	42	134	261	313	52	9	7	-2
거창	1	2	2.5	6	28	238	265	27	3	5	2
창녕	1	1	1.5	17	95	132	138	6	3	6	3
고성	1	1	1.5	3	15	137	159	22	4	4	0
남해	1	1	1.5	33	123	105	121	16	1	1	0
산청	1	1	1.5	2	11	99	101	2	1	2	1
함양	1	1	1	1	5	95	104	9	1	1	0
하동		1	1.5	2	11	71	79	8	2	2	0
합천	1	1	1.5	5	19	66	82	16	1	0	-1
의령	1	1	1	6	24	52	61	9	1	1	0

\* 전년도 우수 출연시군 부담 완화 등 가중치 적용, 보증이용 실적, 손실발생액 등 종합 검토 후 시군  
별 분담액 산정



#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 출연안

의안 번호	2019~132
----------	----------

제출일자 : 2019. 11.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신기술 지원사업을 통하여 석산·석재가공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및 거창화강석의 고부가 가치화와 시장 인지도 제고

## 2. 주요내용

### 가.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1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0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요구액	재 원 별(백만원)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타
2018년	180	180	90	19	71	
2019년	80	80	40	4	36	
2020년	180	180	-	109	71	

- 2018년 ~ 2020년(3년) 연차사업으로 2020년 균특 지방이양 되어 도비로 편성되었으나 3년 연차사업 계획에 따라 전액 편성되었음

### ○ 사업내용

- 산림 석골재자원 품질 관리시스템 개발
- 석재 표면 가공기술 개발
  - 표면가공복합기법
  - 보급형컬링스톤 표면가공 기술개발

## 나. 부서의견

- 우리군 실물경제의 중추인 석재산업계의 석재 표면 가공기술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석재자원의 활용도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등
- 국내 석재산업을 선도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 신기술 지원사업이 필요함
- 국도비가 지원되는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이 2020년 종료되어 마지막으로 지원되는 국도비에 군비를 매칭하여 기술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석재에 함유된 라돈 등의 환경문제로 인하여 소비자 불안감이 조성되었지만 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라돈, 석면 등의 유해성 분석을 실시하여 거창화강석이 안전한 석재임을 입증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1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2

#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지원 출연안

의안 번호	2019~133
----------	----------

제출일자 : 2019. 11. .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1. 제안이유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출연개요

- 근거법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구인모)
- 사 업 비 : 1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0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사업기간	2019년 예산액	2020년 요구액	재 원 별(백만원)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타
2020년	180	180	180	-	-	180	

- 사업내용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운영(인건비 등) 등

### 나. 부서의견

- 거창 석재산업 발전의 중추기능을 맡고 있는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기술지원을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 3. 관련법규 및 조례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7조 및 제9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붙임 1
- 출연 기관현황 : 붙임 2

## 참고자료(거창화강석연구센터 현황)

### I 연구센터 일반현황

####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 연구센터 현황

- 법인명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 거창군수)
- 법인허가(설립등기) : '07. 1. 31.(자본금 : 10백만원(거창군 출연))
- 임원현황 : 이사장 외 14명 (이사 10, 감사 2, 간사 1, 고문 1)
- 직원현황 : 총 5명(센터장 1, 연구직 2, 생산직 2)

성명	직책	담당업무	학위/자격
김건기	연구센터장	연구센터 업무 총괄 / 기술지원	박사/가'
강무환	선임연구원	시험분석 품질업무 / 법인 운영 / 채석기술관련	석사/나'
정영일	선임연구원	시험분석 기술업무 / 사업 관리 / 가공기술개발	석사/나'
조형철	생산/시험팀장	기능석재 공장운영 책임, 품질시험실무 등	학사/다'
이진호	생산/시험담당	품질시험실무 및 보유 장비운영 등	학사/라'

## II 거창화강석 산업현황

### □ 석재산업 현황

#### ○ 채석 및 가공업체 현황

- ▶ 종사인구 대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음

(물류, 유류, 기계, 공구 등 지역경제에 재투자되는 비율이 높음)

(단위 : 개소 / 명 / 백만원)

구 분	계	석산협회	석재조합
업체수	24	6	18
종사자수	253	129	101
매출액 (2018년)	69,865	30,581	39,284
농업조수익	쌀(51,031), 사과(97,773), 딸기(39,333), 한우(123,379)		

※ 비회원사(수가공), 유통업, 중간소매, 석시공 등은 매출액 제외

#### ○ 석재 관급시장 연간 매출 규모(조달청)

- ▶ 관급시장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거창지역 매출액이 증가

(원석, 인건비, 유류비, 물류비 등 부대비용의 증가로 수익성 악화)

(단위 : 백만원)

관급시장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전 국	314,178	338,446	314,004	338,487	384,960	374,732
거 창	33,848	35,451	38,870	40,652	38,200	44,364
거창매출규모	10%	11%	12	12%	10%	12%

※ 관급계약 매출액 기준으로 사급 및 기타 석제품은 제외, 조달청 등록 18개 업체 기준

### Ⅲ 연구센터 주요업무 및 운영계획

#### □ 2019년도 주요업무 및 성과목표

구 분		'18년도 업무 성과	'19년도 성과 목표	'19년도 상반기 성과
기업지원 (석산/가공)	기업애로사항 지원	22건	15건	15건
	기업샘플/시제품 제작	11건	15건	6건
	원산지 검증 지원	2건	4건	5건
	석재 시험분석 지원	328건	300건	229건
	채석/사면 평가 지원	4건	4건	4건
	석재 대외업무 지원	19건	20건	16건
	홍보 마케팅 지원	27건	10건	4건
학술연구용역	한리산 기초학술조사 외	6건	5건	4건
연구개발	기술개발 및 제품화	4건	4건	2건
경영수익	공인시험기관 운영	101,923천원	130,000천원	46,834천원
	채석/사면 평가 지원	25,142천원	30,000천원	15,500천원
	학술연구용역	176,839천원	140,000천원	134,829천원
	기타 수익금	16,953천원	-	566천원
	합 계	218,838천원	300,000천원	197,729천원

□ **기업지원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및 업무지원**

○ 기업애로사항 및 기업체와 연계한 기술개발

구 분	특허	실용신안	상표	제품화실적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24건	1건	4건	7건

	개발제품	특징	업체	개발/사업화 내용
1	교통안내경계석	시인성 확보	하나석재	K마크 인증 품질성능인증 조달우수제품등록 준비중
2	굴림보도판석	폐자재활용	한영대리석	품질성능인증/사업화 2015년 20,000천원 매출
3	기능성 판석 (골다듬 판석)	미끄럼방지	(합)원광석재	영업망 구축 준비 사업화 추진 중
4	문양 교명주	디자인 접목 교명주	위천석재	교명주 특화 생산업체 영업 등을 통한 사업화
5	무광택판재	미끄럼방지	모동석재(주)	판재 전문생산업체 건축사 박람회 등을 통한 홍보
6	조경석 생산	가공조경석	한국석재공업 협동조합	가공조경석 굴림도 측정방법 거창관내 8개 업체 신규생산
7	성곽석 생산	규격전석	거창산업 우리돌	조경석 전문생산업체 전석을 활용한 성곽석 제작

□ **국제공인시험분석기관/단체표준시험기관 운영**

○ '13. 4월 국가기술표준원 석재분야 시험기관 지정

○ '15. 4월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단체표준 시험기관 지정

▶ 전국 석재관련 162개 업체 년 2회 이상 시험분석 업무 지원

▶ 거창관내 32개 업체 분석지원 : 분석수수료 50% 할인

구 분	조경석	경계석	판석	기타	합계
전 국	69	57	36	-	162
거창관내	8	14	5	5	32

구 분	2017년	2018년
시험성적서 발급 건수	322건	328건
시험분석수수료 수익금	117,610천원	101,923천원

□ **가공조경석 단체표준 인증업무 지원**

- 조달청 조경석 시험 및 평가기준 부재로 인한 표준규격 제정 요청
- 가공조경석 형상평가 연구개발을 통한 단체표준 규격 제정  
 상가공조경석 생산방식 및 굴림도 측정평가 방법 제시  
 상조달청과 가공조경석 업체 재계약을 통한 조달품목 등록
  - ▶ **거창관내의 경우 초기 생산업체수는 3개를 시작으로, 현재 8개 업체가 인증업무 지원을 통한 조달청 등록 및 매출 기여**

<b>2013</b>	⇒	<b>조달청 품목 등록 요청사항</b>	⇒	<b>2017</b>	<b>2018</b>
관내		조경석 기준에 대한 문제점 제기		관내	관내
3개		생산방법 및 굴림도 측정평가 방법 제시		8개	8개
2,681 (백만원)		석산의 직접적인 매출증대 요인		10,743 (백만원)	11,602 (백만원)

□ **거창화강석 품질관리 및 수입석 단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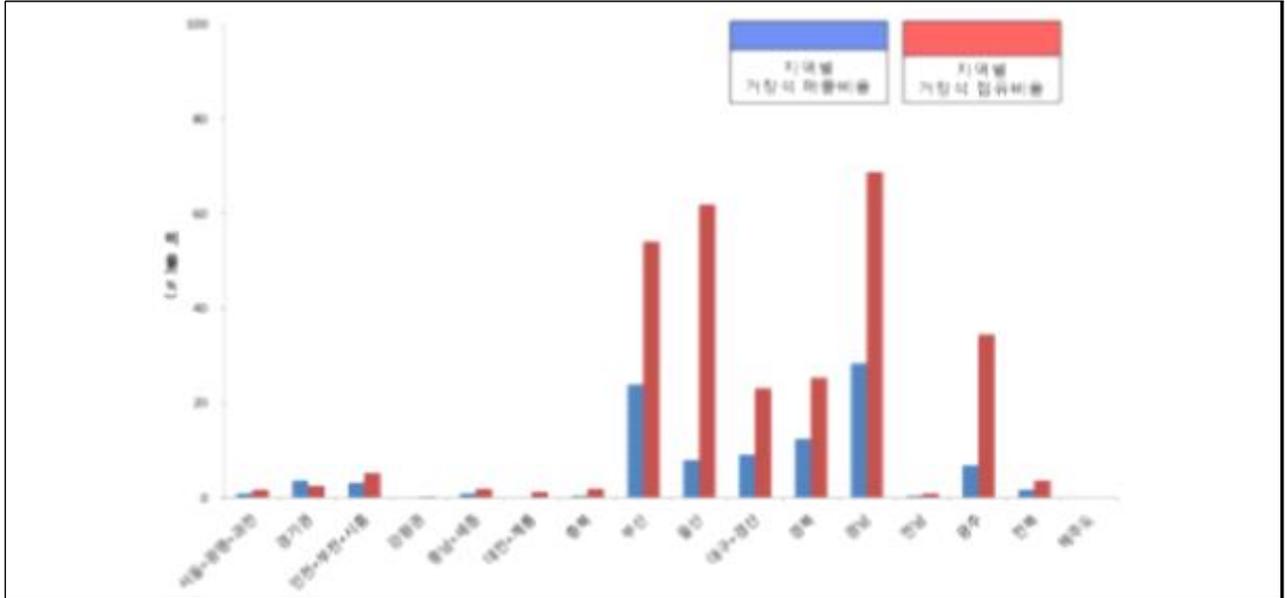
- 석재 원산지 검증 : 부산-울산-경남권 및 대구-경북권
- 울산 “ㄷ” 석재에서 납품된 석재에 대한 원산지 검증 결과  
 상5개 현장에 대하여 70% 이상 수입석 납품(조달품질원 신고)  
 상원산지 검증에 따른 효과 : 거창화강석 보호 및 업체 매출 증대
  - ▶ **울산지역 관급 물량에 대한 관내업체 계약이 85% 이상 확대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15	2016	2017	2018
울산전체 관급물량	1,819	2,010	2,067	2,963	3,223
울산지역 “ㄷ”석재	1,114	192	19	8	6
거창지역 관내업체	520	1,634	1,634	2,470	2,221
타 지역 석재업체	202	184	414	485	1,005
합계	1,836	2,010	2,067	2,963	3,223

## □ 거창화강석 홍보 및 마케팅 활동

- 지역별 거창화강석 판매 비율 및 점유율을 통한 공격적 마케팅  
상경계석 관급매출(197억)의 80% 이상이 경상도권에서 이루어 짐  
상경상도권에서 거창화강석 점유비율이 평균 50% 정도 형성 중  
상경상도권 집중 공략 필요성(홍보마케팅, 영업전략 수립)



- 거창화강석 우수성 홍보 및 품질 신뢰성 확보를 위한 홍보  
상지자체, 건축 및 토목 설계사무소 등 수요자를 대상 직·간접적인 홍보  
상라돈 등 석재관련 환경유해성 물질에 대한 품질 신뢰성 확보 및 홍보

거창화강석 홍보 마케팅 실적		

## □ 연구개발을 통한 성과 활용

연구개발 추진내용	실적 및 성과	기업체 공동개발 및 기술지원	연구센터 수익사업 기업체공동기술개발
석재품질 평가	석재원산지 검증/판별방법	석재원산지검증 조달청원산지검증	원산지검증수수료
	국제공인시험 기관인정	거창업체(50%할인) 시험분석지원	거창지역/전국 시험분석 수수료
	단체표준 시험기관지정	전국석재관련업체 시험분석 지원	가공조경석형상평가 기술개발용역수행 (특허1건등록/2건출원)
급경사지 안정성평가 기술개발	급경사지안정성 평가분석	사면안정성평가/보강 (3개업체 지원)	거창 및 타 지역 사면안정성평가
	사면안정성평가 시스템 구축	석산인허가관련지원	드론을 이용한 사면 평가/지형변화
		석산 환경재해평가 및 사면분석 지원	특허2건출원 준비중
석분슬러지 광물자원화	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	폐기물유해성평가 업무지원(24개업체)	재활용관련기술 (세라믹기술연구원)
	석분재활용 가능성 평가	폐기물 투수/다짐 시험분석지원	석분활용방안 (도시건축과 연계, 특허 1건 출원)
		폐기물관련법 개정(석산복구사용)	
문화관광 콘텐츠개발	디자인/실용화 제품	석재활용제품개발 (기업체 공동개발)	기업체 공동기술 개발 (특허1건출원 준비중) 컬링스톤 상용화
	CNC 장비활용 개발	CNC 장비 활용 가공제품제작지원	
석재표면 처리기술 개발	컬러석재 제조방법	컬러석재 시제품	기업체 공동기술 개발 (특허 3건 출원) 한영대리석 사고석 모동석재 표면처리 (혼드, 브러쉬 등)
	석재표면 처리방법	샘플제작/납품	
		석재표면처리기술 (기업체공동개발)	

## □ 석분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지원

### ○ 석분슬러지 처리 및 재활용을 위한 유해성 분석지원

상석재 가공시 발생하는 석분슬러지의 처리 및 재활용을 방안을 모색  
 상석분슬러지 관련 각종 시험, 분석업무 등 기업지원 및 애로사항해결  
 상석분슬러지 유해성 분석지원 ⇒ 관내 22개 업체에 대한 유해성 분석지원

구 분	대 상	구 분	대 상
토양오염공정시험	21개업체 석분	토양용출시험	6개업체
토양오염공정시험	토양(50):석분(50)	석분다짐시험	토양(50):석분(50)

### ○ 석폐기물 관련 규제개혁을 통한 재활용 범위확대

상14. 4월 : 폐석·석분에 관한 규제개혁 건의안 발굴

(거창군, 거창석재조합,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상14. 9월 : 샘플 시험성적서 환경부 송부 ⇒ 유해성 없음

상14. 10월 10일 :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행정예고(환경부,제2014-580호)

상14. 11월 18일 : 전자관보 고시(제18390호)/고시한 날부터 시행 중

⇒ 석재 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폐석재(폐석).폐석분토사(석분)을 수분 함  
 량 30%이하로 건조한 후 폐기물의 유해물질.토양오염우려 기준 미만 시  
 석산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 재활용 가능

### ○ 관련 법령 개정

상14. 11월 24일 폐기물의 재활용시설 외의 장소에서의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관한 규정』행정 예고(환경부,제2014-679호)

상15. 1월 13일 : 전자관보 고시(제18428호)/고시한 날부터 시행 중

### ○ 2015년 이후 산지관리법 및 폐기물 관리법 개정이후 처리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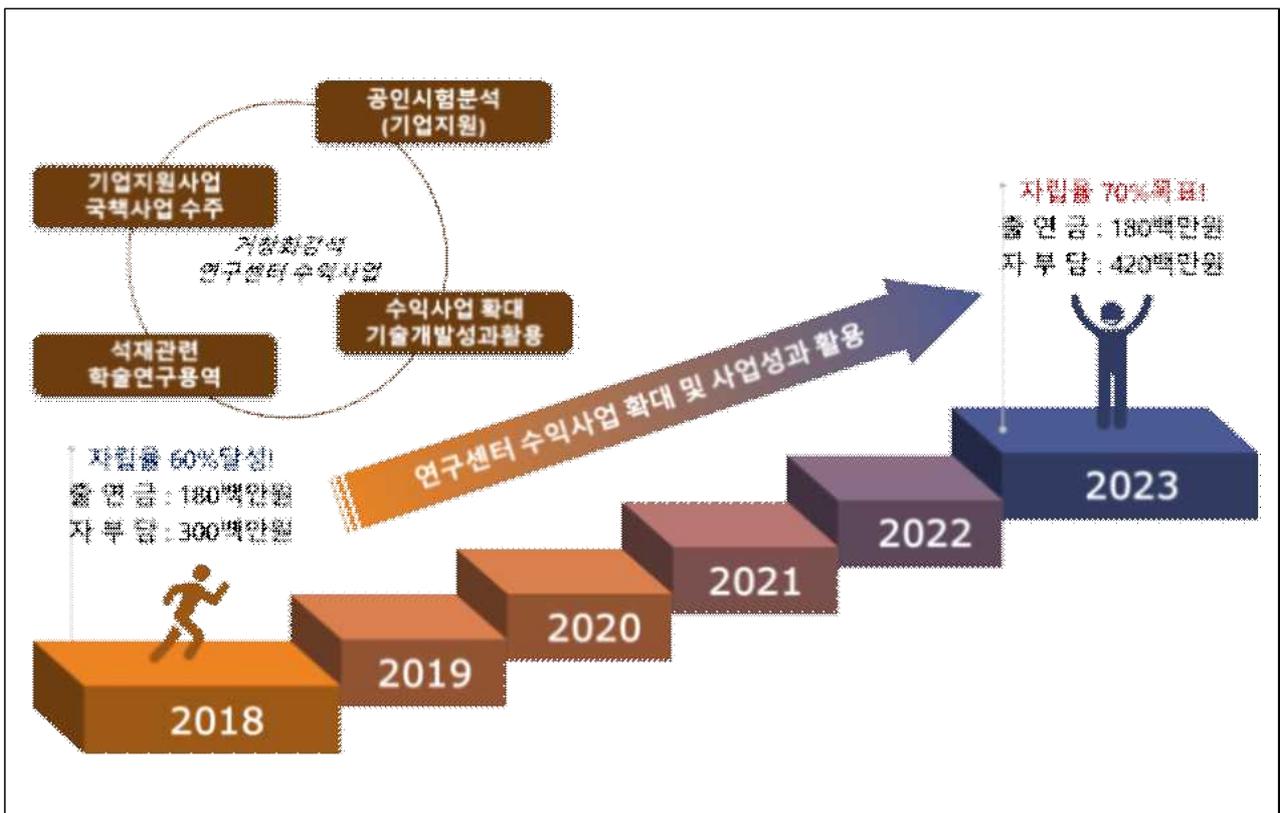
년도	실 적	내 용	처리량 (m <sup>3</sup> )
2015	마리면 우량농지조성 성토재 활용 외 2건	저지대 성토	6,307
2016	주상면 희랑생활체육공원 성토재 활용 외 1건	저지대 성토	10,841
2017	위천면 당산 우량농지조성 성토재 활용 외 3건	저지대 성토	9,155
2018	남상면 대산리 우량농지조성 성토재 활용 외 3건	저지대 성토	11,693

# IV

## 연구센터 향후 운영계획

### □ 연구센터 운영계획

- 연구센터 설립목적은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것으로 석재관련 기업지원 및 기업체 연계기술 개발, 홍보 및 마케팅, 국책사업수주 등을 통한 지원재원 확보, 국제공인시험기관 운영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연구센터 운영예산은 2011년부터 국비지원에서 군비로 전환되었고, 2013년도에는 군 출연금을 2억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축소하였음
- 2015년도부터 각종 경영수익사업의 확대를 통해 현재 군비지원 대비 운영예산의 60%를 자체 충당하고 있음
- 향후 연구센터는 경영자립화를 위해 지속적인 수익사업 확대 및 사업발굴을 통하여, 자립율 70%를 목표로 관리 및 운영할 계획임



[연구센터 운영 및 자립화 계획]

## 관 계 법 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제정) 2006.12.12 조례 제1825호

(일부개정) 2008.01.14 조례 제1878호

####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

#### 제 2조 (법인격 및 명칭)

연구센터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라 한다.(개정 2008. 1. 14)

#### 제 3조 (사무소)

연구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 4조 (운영 등)

- ①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8. 1. 14)
- ② 연구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5조 (임원)

- ① 연구센터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인을 둔다.
- 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를 두되 임기와 임면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 6조 (사업)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안정적인 원석 확보 및 자연 친화적인 폐석산 복구기술개발사업
2. 화강석 신소재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3. 산·학·연 공동기술연구개발과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
4. 산업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정보유통망 구축 운영사업
5. 화강석 제품의 성능 시험 및 검사, 품질 평가 등 사업
6.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임·위탁사업과 용역사업
7. 산업인력 교육 및 기술지도 사업
8. 그 밖에 연구센터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제 7조 (재산조성 및 운영경비)

연구센터의 설립·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산과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 제 8조 (수익사업)

연구센터는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설립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 제 9조 (출연금 등의 지원)

-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연구센터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 10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제 11조 (업무의 위탁)

- ① 군수는 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연구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업무 위탁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 12조 (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 연구센터의 경영상황 및 중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78호 거창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제정  
2008.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설립근거	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전화번호 : 055-943-3924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홈페이지 : granite.re.kr			
주요연혁	법인설립허가 : '07. 1. 31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인원현황 ('19. 10.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5명		5명	0명			
입원 ('18. 9.기준)	직책 (직책명)	성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입기 (법령상 정해진 입기 기재)			
	이사장	구○○	거창군청(거창군수)	당연직			
	상임이사	김○○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	"			
	비상임이사	이○○	경남도립거창대학 산학협력단장	"			
		최○○	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	"			
		조○○	거창석재조합(주) 대표	"			
		김○○	거창석산협회장	"			
		김○○	거창군청(미래전략과장)	"			
		주○○	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	'19. 3. 21 ~ '22. 3. 20			
		김○○	한국승강기대학 교수	'19. 3. 21 ~ '22. 3. 20			
	감사	임○○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19. 3. 21 ~ '22. 3. 20			
		최○○	거창군청(산림과장)	당연직			
	고문	변○○	변범식변호사사무소 대표	'19. 3. 21 ~ '22. 3. 20			
강○○		모동기업사 대표	-				
주요기능	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자본금 <sup>1)</sup> (단위:백만원)	10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180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7	2018	2019	재무현황 (백만원) '18.12.31기준	자산	203 (자산 총액)
	예산액 <sup>2)</sup>	488	487	655		부채	10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 <sup>3)</sup>	200	180	180		자본 <sup>1)</sup>	193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8. 12. 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305			289		16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 번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 위 항목중 해당사항이 없으면 '공란'으로 처리